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중석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9월 18일

발 의 자 : 이중석, 유경선 의원

찬 성 자 : 홍길식·안한희·김해숙  
박경희·차승연·윤유현  
김덕현 의원 (7명)

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“보일러”란 다음에 “분말소화기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말소화기	10kg미만(가정용)	3,000
-------	-------------	-------

## 1. 제안이유

2017년 1월 26일 시행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4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규정되어 있는 바,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폐소화기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“분말소화기”를 신설함  
(안 별표 1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의2 및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별표4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5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

나. 예산조치 :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부서협의 : 청소행정과

2) 입법예고 : 2018.09.18. ~ 2018.09.28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관계 법령

현 행			개 정 안		
<p><b>[별표 1]</b>                     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수수료 품목                      별 부과기준(제2조제7호, 제35조제                      1항제2호 관련)</p>			<p><b>[별표 1]</b></p>		
품목별	규격	부과금액	품목별	규격	부과금액
보일러	16cal/h 이상	11,000	보일러	16cal/h 이상	11,000
	16cal/h 미만	7,000		16cal/h 미만	7,000
비디오		면제	분말소화기	10kg미만(가정용)	3,000
			비디오		면제

□ 폐기물관리법

제2조의2(폐기물의 세부분류)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,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5. 7. 20.]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)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.

[별표 4] <개정 2018. 5. 17.>

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(제4조의2제1항 관련)

3.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

91-19-00 폐소화기류

91-99-00 그 밖의 생활폐기물

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9조의5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 >[본조신설 2016. 1. 27.]

-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
제15조의4(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)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 
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 
소화기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[본조신설 2017. 1.  
26.][중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<2017. 1. 26.>]